

#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004호
- 나. 발의자 : 이민옥 의원(찬성자 28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0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08월 21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 (2023.3.27.)됨에 따라 소속 분과위원회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도 폐지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 내용 중 ‘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’에 대해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부분을 ‘필요 시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’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.

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7일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인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시 별도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.

#### 나.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(안 제6조제3항)

-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,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 한 바 있음.
- 희망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서울시 산업·경제 관련  
▶ 거시 정책 조정과 중장기계획 수립·집행, ▶ 시와 자치구 또는 위원회

간의 협의 · 조정, ▶ 신성장 동력 산업과 도심형 제조업, 금융산업, 마을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 · 심의를 수행하며, 「시 · 도경제협의회 규정」<sup>1)</sup>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 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왔음.

- 그러나 희망경제위원회는 2020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서울시의 ‘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’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었음.

#### < 희망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>



- 
- 1) 제9조(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)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 · 조정을 위하여 각 시 · 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27일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되었으나 다수의 조례에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의 누락이 발생하였음.

### <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 대체 현황 >

| 희망경제위원회 조례(제4조)   | 입법반영 여부   |
|---|---|
| 1. 산업·경제에 관한 주요 거시적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|   |
| 2. 산업·경제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| 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」)  |
| 3.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 |   |
| 4.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 관내 20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5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0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| 미반영   |
| 6. 신성장동력산업 및 도심형 제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| 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」)                   |
| 7. 산업·경제 분야와 직·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정책집행사항으로 거시적인 정책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| 미반영   |
| 8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신규 반영 필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 제6조제3항<br>희망경제위원회 지문 조항 삭제 필요)                     |
| 10.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산업·경제 분야 및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)  |
| 11.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2항에 신규 반영 필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지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 | 미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<br>시민시장운영위원회 대행으로 희망경제위원회가 삼자지문 조항 삭제 필요) |
| 13.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)  |
| 14. 시 관내 미을기업의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| 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)   |
| 15. 시 관내 금융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| 반영<br>(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)  |

- 이에 동 개정안은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인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있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| 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
- 한편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·소속·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위원의 수·자격·선임 방법·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,<sup>2)</sup>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도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위원회의 설치목적·기능 및 성격, 위원의 구성 및 임기,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---

2) 법제처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p. 203.

- 따라서 동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규칙을 통해서라도 위원회의 기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다만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동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은 최소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은 채 규칙으로 모든 규정을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< 수정의견 >

| 개정안  | 수정의견   |
|--|--|
| 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br/>           ① ~ ⑤ (생략)<br/> 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br/>          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u>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</li> </ol> |

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의견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<u>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<u>제6조의3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, 소상공인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</li> <li><u>2.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</u></li> <li><u>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</li> </ul> <p><u>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</u></p> <p><u>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 |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         |
| 김용우    | 02-2180-8062 |